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4. 25.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의

□ 수정 이유

-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, 국어기본법과 계량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표준용어의 사용으로 조문 표기의 정확성을 기함

□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 “천년대종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
- 안 제4조 (대상시설) 제1호중

“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” 을 “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” 로 하고

- 동조 (대상시설)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
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 1층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①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 “천년대종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
○ 안 제4조 (대상시설) 제1호중

“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” 을 “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” 로 하고

○ 동조 (대상시설)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
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 1층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</p> <p><u>제2조(명칭) 종의 명칭은</u> 충북천년대종(이하“천년대종”이라 하며, “종 및 종각”을 포함한다)이라 한다.</p> <p><u>제4조(대상시설)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 : 1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규격 : <u>높이 3.89m, 바깥지름 2.24m</u> - 무게 : 21톤 - 재질 : 주석, 구리 2. 종각 : 1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면적 : <u>21평</u> - 건축형태 : <u>전통한식 목조 팔작지붕, 모로단청</u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</p> <p><u>제2조(명칭) ① 종의 명칭은</u>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“천년대종”이라 한다) 으로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</p> <p><u>제4조(대상시설) “현행과 같음”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규격 : <u>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</u> - - 2. 종각 : 1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축면적 : <u>70.56제곱미터</u> - 건축형태 : <u>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, 1층</u>

충청북도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대종 및 종각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①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(이하 "천년대종" 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.

제3조(위치) 천년대종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에 위치한다.

제4조(대상시설) 천년대종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종 : 1구

- 규격 : 높이 3.89미터, 바깥지름 2.24미터
- 무게 : 21톤
- 재질 : 주석, 구리

2. 종각 : 1동

- 건축면적 : 70.56제곱미터
- 건축형태 :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, 모로단청, 1층

제5조(관리) ① 도지사는 천년대종의 화재, 도난, 훼손, 멸실 등의 예방 및 기타 그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천년대종의 안내 및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6조(타종) 천년대종은 제야, 3.1절,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각종 기념일, 경축행사,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타종할 수 있다.

제7조(타종 주관부서 및 타종대상자 선정) 천년대종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,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서 선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